

# 1987년도 정부노임단가 기준고시

## 1987년도 정부노임단가기준 적용요령

1. 이 노임단가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적용할 노무비의 기준금액을 설정한 것이다.
2. 이 노임단가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된 작업에 종사하는 직종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3. 이 노임단가는 기본금액을 표시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하여는 이 노임단가를 기준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의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한다. 다만, 제조부문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거 1월을 25일로 계상하여 산정된 단가이다.
4. 국가기술자격법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 자로서 동법 제 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처에 등록된 기능계 기술자격취득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취지에 따라 이 노임단가의 100분의10 범위내에서 일정액을 이 노임단가에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직종은 이 기준중 유사한 직종의 단가에 의할 수 있다.
6. 이 노임기준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의 협의를 받아 이를 조정한다.
7. 도서지역 노임단가의 적용지역은 도서지역일원(제주도, 울릉도, 포함)으로 한다.
8. 이 기준은 1987. 1.1부터 적용한다.

### ○공사부문

(단위 : 원)

부 문 별	직종번호	직 종 명	명 단 가
공사부문	1	갱	부 8,530
	2	도 목	수 13,010
	3	건 축 목	공 11,330
	4	형 특 목	공 11,660
	5	창 호 목	공 11,620
	6	철 골	공 11,640
	7	철	공 10,770
	8	철 근	공 11,460
	9	철 판	공 10,930
	10	섯 터	공 11,740
	11	샷 시	공 11,130
	12	질 단	공 9,640
	13	석	공 12,070
	14	특수비계공 (15m이상)	12,870
	15	비 계	공 11,500
	16	동 발 공 (터널)	10,220
	17	조 적	공 10,930
	18	벽돌 (블럭) 제작	공 10,250
	19	연 돌	공 10,500
	20	미 장	공 11,450
	21	방 수	공 10,790
	22	타 일	공 11,350
	23	줄 눈	공 9,760
	24	연 마	공 9,890
	25	큰 크 리 트	공 10,540
	26	바 이 브 레 타	공 9,400
	27	보 일 러	공 12,380
	28	배 관	공 10,200
	29	온 돌	공 9,830
	30	위 생	공 10,100
	31	보 은	공 9,660

부 문 별	직종번호	직 종 명	단 가
	32	도 장 공	11,220
	33	내 장 공	11,060
	34	도 배 공	10,640
	35	아 스 타 일 공	11,380
	36	기 와 공	11,320
	37	슬 레 이 트 공	9,450
	38	화 약 취 급 공	12,010
	39	착 압 공	10,740
	40	보 안 공	7,450
	41	포 장 공	10,500
	42	포 설 공	10,080
	43	괘 도	공 7,990
	44	용 접 공 (철도)	11,930
	45	잠 수 부 (4인조)	57,420
	46	잠 함 공	14,280
	47	보 링 공 (지질조사)	10,260
	48	우 물 공	9,380
	49	영 림 기 사	12,490
	50	조 원 공	10,680
	51	별 목 부	8,630
	52	조 림 인 부	9,410
	53	플랜트기계설치공	12,990
	54	플랜트용접공	11,560
	55	플랜트배관공	11,410
	56	플랜트제관공	12,140
	57	시 공 측 량 사	11,780
	58	시 공 측 량 사 조 수	7,880
	59	측 부	6,110
	60	검 조 부	5,390
	61	송 전 전 공	19,390
	62	배 전 전 공	15,860

부 문 별	직종번호	직 종 명	단 가
	63	플랜트전공	13,650
	64	내선전공	12,410
	65	특고압케이블전공	17,710
	66	고압케이블전공	15,050
	67	저압케이블전공	12,480
	68	철도신호공	11,510
	69	계장공	10,590
	70	전기공사기사 1급	15,480
	71	전기공사기사 2급	12,800
	72	통신외선공	12,410
	73	통신설비공	12,700
	74	통신내선공	12,570
	75	통신케이블공	14,200
	76	무선안테나공	14,690
	77	통신기사 1급	17,210
	78	통신기사 2급	13,860
	79	통신기능사	12,460
	80	수작업반장	11,890
	81	작업반장	10,410
	82	목도	10,470
	83	조력공	7,600
	84	특별인부	9,100
	85	보통인부	6,520
	86	여자인부	4,150
	87	중기운전기사	11,690
	88	운전사(운반차)	10,040
	89	운전사(기계)	9,760
	90	중기운전조수	7,190
	91	고급선원	13,450
	92	보통선원	10,230
	93	선부	8,240
	94	준설선선장	14,830
	95	준설선기관장	13,480
	96	준설선기관사	10,660
	97	준설선운전사	10,670
	98	준설선전기사	10,570
	99	기계설치공	11,340
	100	기계공	8,990
	101	선반공	10,040
	102	정비공	10,350
	103	벨트콘베어작업공(남)	8,140
	104	벨트콘베어작업공(여)	4,060
	105	현도사	14,060
	106	제도사	10,120
	107	시험사 1급	13,770
	108	시험사 2급	11,300
	109	시험사 3급	10,440
	110	시험사 4급	8,550
	111	시험보조수	6,950
	112	안전관리기사 1급	14,440
	113	안전관리기사 2급	10,510

부 문 별	직종번호	직 종 명	단 가
	114	유리공	10,450
	115	함석공	10,480
	116	용접공(일반)	11,100
	117	리벳공	11,230
	118	루핑공	8,750
	119	닥트공	10,120
	120	대장공	8,130
	121	할석공	11,760
	122	제철축로공	17,910
	123	양생공	8,070
	124	계령공	7,790
	125	사공(배포함)	12,660
	126	마부(우마차포함)	18,360
	127	제재공	10,800
	128	철도케도공	11,120
	129	기적기사 1급	15,500
	130	지적기사 2급	13,900
	131	지적기능사 1급	9,690
	132	지적기능사 2급	7,860

○도서지역

부 문 별	직종번호	직 종 명	단 가
공사부문	1	건축목공	13,210
	2	형틀목공	12,750
	3	철근공	11,350
	4	조적공	11,610
	5	미장공	12,690
	6	방수공	12,610
	7	타일공	12,870
	8	연마공(기계)	12,260
	9	콘크리트공	10,460
	10	화약취급공	15,860
	11	착암공	12,420
	12	포장공	12,440
	13	잠수부(4인조)	69,530
	14	특별인부	9,440
	15	보통인부	7,280
	16	여자인부	5,030
	17	중기운전기사	12,800
	18	운전수(운반차)	10,530
	19	중기운전조수	9,100
	20	고급선원	12,720
	21	보통선원	9,080

○제조부문

부 문 별	직종번호	직 종 명	단 가
제조부문	1	기계설계사	10,350
	2	회로설계사	10,770
	3	제도사	7,330
	4	현도사	7,410

부 문 별	직종번호	직 종 명	단 가
	5	마 킹 공	5,800
	6	철 물 재 단 사	7,990
	7	철 물 재 단 공	6,370
	8	산 소 절 단 공	6,820
	9	회 전 쇠 톱 공	5,970
	10	금 속 쇠 톱 공	5,000
	11	모 형 절 단 공	5,490
	12	가 위 절 단 공	4,100
	13	단 금 절 단 공	4,790
	14	초 음 파 절 단 공	4,650
	15	방 전 절 단 공	5,860
	16	샤 링 공	5,980
	17	프 레 스 공	5,600
	18	밀 링 공	6,330
	19	쉐 이 퍼 공	6,160
	20	흡 평 공	6,250
	21	로 구 로 공	5,560
	22	드 릴 공	5,250
	23	태 평 공	4,770
	24	보 링 공	6,690
	25	자 동 선 반 공	6,600
	26	수 동 선 반 공	6,320
	27	프 레 나 공	6,270
	28	스 롯 타 공	6,450
	29	불 반 공	5,270
	30	강 판 공	5,700
	31	판 금 공	6,440
	32	합 석 공	6,920
	33	문 자 조 각 기 공	5,880
	34	모 형 조 각 기 공	5,700
	35	3 본 로 라 공	6,640
	36	벤 딩 머 신 공	5,110
	37	절 곡 공	5,870
	38	수 동 교 정 공	6,160
	39	벨 런 스 머 신 공	5,550
	40	요 철 공	4,910
	41	열 처 리 공	6,150
	42	용 해 공	5,960
	43	금 형 공	7,000
	44	목 형 공	6,600
	45	주 물 공	6,300
	46	다 이 카 스투 공	5,870
	47	단 조 공	6,540
	48	압 연 공	6,500
	49	인 발 공	4,650
	50	압 출 공	5,910
	51	합 금 공	6,420
	52	제 금 공	5,300
	53	연 화 공	6,310
	54	신 선 공	5,100
	55	연 선 공	4,460

부 문 별	직종번호	직 종 명	단 가
	56	절 연 공	5,080
	57	연 합 공	5,070
	58	대 연 공	4,580
	59	테 이 평 공	5,320
	60	케 이 블 건 조 공	4,650
	61	케 이 블 제 조 공	4,460
	62	피 복 공	4,690
	63	권 취 공	4,500
	64	구 목 공	4,750
	65	리 벳 공	4,510
	66	용 접 공	5,940
	67	접 점 공	4,250
	68	권 선 공	5,370
	69	랍 평 공	4,350
	70	레 이 저 광 선 공	7,530
	71	양 극 처 리 공	4,050
	72	합 성 수 지 피 막 공	5,490
	73	진 공 칩 적 합 칩 공	4,320
	74	일 반 화 학 공	6,670
	75	조 성 화 학 공	6,910
	76	고 무 제 품 제 조 공	4,040
	77	요 업 공	5,920
	78	유 리 제 품 제 조 공	5,460
	79	그 라 인 다 공	5,260
	80	지 석 연 마 공	5,720
	81	사 지 공	3,860
	82	세 척 공	4,720
	83	빠 후 공	5,610
	84	콤 파 운 드 연 마 공	5,960
	85	전 해 연 마 공	5,460
	86	화 학 연 마 공	5,660
	87	호 닝 공	5,710
	88	도 장 공 (취부)	5,990
	89	도 장 공 (붓칠)	4,910
	90	목 공 도 장 공	6,100
	91	빠 데 도 포 공	5,600
	92	흡 밍 공	4,070
	93	배 선 공	6,790
	94	전 기 도 금 공	5,020
	95	침 척 도 금 공	4,760
	96	사 출 공	4,790
	97	성 형 공	5,290
	98	압 출 공	5,600
	99	제 재 공	6,310
	100	정 척 공	4,470
	101	제 재 기 계 운 전 공	5,690
	102	목 재 건 조 기 계 공	5,110
	103	합 판 제 조 공	3,730
	104	가 구 공	6,000
	105	목 공 및 유 리 공	6,700
	106	벨트콘베어작업공	6,090

부 문 별	직종번호	직 종 명	단 가
	107	부 품 조 립 공	4,650
	108	전 자 제 품 조 립 공	4,400
	109	약 전 기 계 조 립 공	5,820
	110	강 전 기 계 조 립 공	6,600
	111	경 기 계 조 립 공	5,540
	112	중 기 계 조 립 공	6,380
	113	제 품 시 험 공	6,200
	114	제 품 조 정 공	5,230
	115	제 품 검 사 공	4,750
	116	물 품 포 장 공	4,200
	117	철 강 포 장 공	4,950
	118	도 안 공	8,060
	119	제 본 공	6,480
	120	공 판 인 쇄 공	6,770
	121	읍 셋 인 쇄 공	7,250
	122	활 판 인 쇄 공	7,230
	123	사 진 제 판 공	7,480
	124	인 쇄 동 판 제 조 공	6,890
	125	인 쇄 연 판 제 조 공	6,420
	126	활 판 식 자 공	6,590
	127	문 선 공	6,870
	128	필 경 사	9,120
	129	공 판 타 자 수	7,020
	130	프 린 트 인 쇄 공	5,690
	131	교 정 사	8,010
	132	지 류 재 단 공	5,880
	133	직 물 재 단 사	8,730
	134	직 물 재 단 공	4,270
	135	상 칩 공	3,820
	136	하 칩 공	3,480
	137	이 본 칩 공	4,230
	138	오 바 로 그 공	3,950
	139	징 검 기 공	3,380
	140	인 타 로 그 공	3,670
	141	스 냅 공	3,810
	142	연 단 공	3,790
	143	직 포 공	3,860
	144	칩 염 공	3,730
	145	연 사 공	3,940
	146	정 경 공	3,910

부 문 별	직종번호	직 종 명	단 가
제조부문	147	염 직 공	5,220
	148	관 권 공	3,440
	149	재 봉 기 계 사	5,890
	150	방 직 기 계 보 전 공	6,740
	151	편 직 공	4,340
	152	횡 편 공	6,250
	153	제 화 공	4,570
	154	피 혁 공	3,790
	155	빵·과자및식품류제조공	5,400
	156	조 리 사	5,790
	157	영 양 사	7,250
	158	남 자 인 부	5,180
	159	여 자 인 부	3,460
	160	작 업 반 장	6,940
	161	양곡처리공 (남)	7,610
	162	양곡처리공 (여)	4,120
	163	컴 퓨 터 운 전 사	7,430
	164	기 계 기 술 공	7,750
	165	보 선 공	6,650
	166	차 량 정 비 공	7,980
	167	기 계 정 비 공	7,620
	168	안 전 관 리 사	10,380
	169	품 질 관 리 사	11,970
	170	품 질 관 리 공	5,630
	171	다 듬 질 공	5,280
	172	중 기 운 전 사	7,800
	173	컴 퓨 터 S/W 기사	13,240
	174	컴 퓨 터 H/W 기사	14,450
	175	통 신 기 계 조 립 공	3,750
	176	컴 퓨 터 키 판 치 공	6,170
	177	통 신 외 선 공	7,980
	178	통 신 내 선 공	7,090
	179	무 선 안 테 나 공	7,470
	180	통 신 기사 1 급	14,120
	181	통 신 기사 2 급	10,710
	182	통 신 기 능 사	6,110
	183	목 제 포 장 공	5,520
	184	목 도	5,400
	185	사 진 식 자 공	7,740
	186	도 자 기 및 애 자 공	6,710

**공동주택  
지하층  
활용촉진**

공동주택지하층은 대피시설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평상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동 지하층에 입주민의 공동주거생활에 필요한 편익시설인 도서실, 입주자 회의실, 관리사무소, 주차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여러분께서 공동주택을 설계할

경우 동지하층을 입주민이 자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조체의 층고 및 이용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함은 물론, 기타 환기, 배수, 채광 등 환경 위생상 지장이 없도록 설계 등을 하여 공동주택 지하층이 적극 활용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7. 1. 10